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200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중 소 기 업 청 장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952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되어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이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정책분석과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옴부즈만지원단을 신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 · 시행(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2011. 9. 30. 시행)됨에 따라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정원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재창업 활성화 및 정부 3.0 추진을 위하여 정원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구미전자공업고등

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 3명(6급 3명)을 증원하고,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소속기관 정원 3명(7급 3명)을 증원하며,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별도정원을 조정하고, 새 정부 국정기조에 맞춰 본청 하부조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행정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 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 042-481-4354, Fax : 042-472-327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법무담당관”을 각각 “창조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 내 정부3.0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제7조제2항 중 “정책총괄과, 기업금융과, 인력개발과, 규제영향평가과 및 지역특화규제개선과”를 “정책총괄과, 정책분석과, 동반성장지원과, 규제영향평가과 및 지역특구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9호 및 제13호부터 제23호까지를 삭제하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제24호를 제18호로 하고,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중소기업에 관한 업종별·지역별 동향의 조사·분석 및 전망

13. 업종별 경쟁력 실태조사

14. 중소기업 관련 지표 및 통계의 관리

15. 중소기업 현황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16.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의 개발

17. 청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및 자체 통계 품질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정책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시책의 조사·분석 및 정보연계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중소기업시책 성과의 점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점검 및 평가
4.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시책의 연계 및 중복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시책의 기준, 절차, 서식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시책의 통합적 관리와 분석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고도화
7.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시책 및 정보의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8. 중소기업시책의 연계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사용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⑤ 동반성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지원
2.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운영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위탁거

래 실태조사 및 개선

4.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5. 수탁·위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6.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7. 수·위탁 조사기법 개발 및 조사의 신뢰성·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관행 및 결제조건에 대한 조사·개선
9.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10.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육성시책의 수립·추진
11. 중소기업의 조직화 촉진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운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관리·감독
13.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영
14. 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관련단체에 대한 조사 및 해산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6항 중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부터 제13호까지,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를 삭제하고, 제10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6호까지로, 제14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제7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10.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

11.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운영

같은 조 제7항 중 “지역특화규제개선과장”을 “지역특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운용

9.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시책의 추진

10.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종합·조정

11. 취약·낙후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에 제23호부터 제24호까지를 제31호부터 제32호까지로 하고, 제23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사업조정제도 종합계획의 수립

24. 사업조정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추진

25. 사업조정심의회 운영 지원

26. 사전조사신청제도 운영 지원

27. 일시정지제도 운영 지원

28. 사업조정 피해 실태조사 및 자료 분석

29. 사업조정 권고, 불이행시 공표 및 이행명령 상황 점검

30. 사업조정제도 교육 지원

제8조의2제2항 중 “중견기업정책과, 혁신지원과 및 성장촉진과”를 “중견기업정책과, 기업혁신지원과 및 재도전성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7호 및 제11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11. 중견기업의 세제 및 입지에 관한 사항
12.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13. 중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총괄
14. 중소·중견기업 성장 저해요인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5.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중견기업 지원시책의 연계에 관한 사항
17.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8. 중견기업의 기업가정신 창달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19. 가업승계 원활화 지원
20. 그 밖에 중견기업에 관한 업무 중 중견기업정책국 내의 다른 과의 소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같은 조 제4항 중 “혁신지원과장”을 “기업혁신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1호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중견기업 관련 금융 및 투자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 연구
11. 중견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
12. 중견기업의 기업인수·합병, 신사업 발굴 활성화 등 신성장 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 및 추진

13. 벤처형 중견기업 지원 시책의 수립 및 추진

14. 중견기업 성장 후보 기업군의 발굴 및 관리

15.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재도전성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재도전 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중소기업 퇴출부담 완화에 관한 사항

3. 중소·중견기업 구조조정 전문가의 양성, 자격부여,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경영진단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업건강 관리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기업건강 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7. 기업건강 진단기관 및 치유기관 업무 조정

8. 기업건강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9. 기업건강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부실화 차단

10.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부실징후기업 정상화 지원

1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12.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3.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실태조사 실시

14.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15.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 조사 등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17. 사업전환 지원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정보 제공

18.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컨설팅 지원

19.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지원

20.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의 자금·투자·인력·입지 및 세제 지원

21. 유휴설비의 유통 지원

22. 중소기업의 회생 및 사업정리 지원

23. 중소기업 재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4. 중소기업 재기 관련 실태조사, 동향분석 및 애로사항 발굴·개선에 관한 사항

25. 중소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교육, 조세·법률 상담 및 교육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에 제5호부터 제6호까지, 제12호부터 제27호까지를 삭제하고,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제28호부터 제30호까지를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판로정책과, 공공구매제도과 및 해외시장과”를 “공공구매판로과, 기업금융과, 인력개발과 및 해외시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공구매판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증대에 관한 사항
3.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제도의 운영
4.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지원
5.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6.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제도의 운영
7.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의 운영
8.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9.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운영
1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의 구축·운영
1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실태 조사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13. 공공구매론 제도의 운영
14.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확인제도의 운영
15.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제도의 운영
16. 적격조합확인제도의 운영
1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교육에 관한 사항
19.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운영

20. 중소기업의 남북경제협력 지원
21.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2.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차별적 관행의 시정
23.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판로 지원
2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25.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운영
26.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27.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구축 지원
28. 중소기업의 판로동향 분석 및 판로 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29.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상표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0. 중소기업 공동 사후 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31. 중소기업 공동물류시설의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
32. 민속공예산업의 육성
33.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전시판매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4. 중소기업제품 국내 전시판매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5. 중소기업자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36.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7. 중소기업제품의 수요기반 및 판로확충에 관한 사항
38. 중소기업에 대한 연계생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39. 중소기업 마케팅 관련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0.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발굴 및 유통망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41. 홈쇼핑 및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
 42.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3.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
 4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기업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연도별 금융 및 자금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2.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총괄·운영
 3. 금융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
 6. 중소기업전용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8.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9.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 인가 및 지도·감독
 10.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에 관한 사항
 12.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지도·감독
 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운용
 14. 중소기업의 어음제도 및 매출채권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의 금융거래 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촉진에 관한 사항
 17.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 경영실태·동향 조사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 ⑤ 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동향분석 및 인력지원계획의 수립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운용
 3.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및 인적자원관리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9.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촉진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에 관한 사항
 12.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14.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교육 등 경영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고용 촉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7.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8.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9.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6항에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6. 중소기업 분야의 다자간 및 양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7. 외국의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교류·협력
18. 외국인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19. 중소기업과 관련된 국제 동향 및 정보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20.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 및 실태의 조사·분석
21. 해외 파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제3항에 제16호와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6.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26. 중소기업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

같은 조 제4항 중 제12호부터 제13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신기술사업화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5항 중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거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간 기술 융합·복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의 지원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옴부즈만지원단) 옴부즈만지원단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조제3항에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고, 제27호를 제28호로 하며, 제28호(종전의 제27호) 중 “기획조정관 및 창업벤처국”를 “기획조정관, 중견기업정책국 및 창업벤처국”으로 하고, 제26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6. 재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7. 중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4항에 제8의2호부터 제8의3호까지를, 제21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의2. 지역내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8의3. 지역금융지원위원회의 운영

21. 중소기업 계약학과 지원에 관한 사항

22.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6항제18호 중 “기술혁신국”을 “생산기술국”으로 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2 중 총계 “336”을 “347”로 하고, 일반직 계 “315”를 “326”으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을 “7”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3”을 “14”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을 “5”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3”을 “45”로 하며,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4”를 “7”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42”를 “44”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335”를 “3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14”를 “325”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을 “7”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3”을 “14”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을 “5”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8”을 “50”으로 하며,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4”를 “7”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36”을 “38”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10”을 “4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56”을 “359”로

하며, 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69”를 “94”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16”을 “19”로 하며, 공업연구사 “45”를 “20”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479”를 “482”로 하고, 일반직 계 “42”를 “45”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 또는 사서주사 “12”를 “15”로 한다.

별표 6 중 중소기업청 공무원 별도정원의 총계 “3”을 “1”로 하고, 일반직 계 “3”을 “1”로 하며, 일반직 계 1(종전의 일반직 계 3) 다음에 “5급 1”과 “6급 1”을 삭제하고, 지방중소기업청 공무원 별도정원의 총계 “8”을 “13”으로 하며, 일반직 계 “8”을 “13”으로 하고, 6급 5 다음에 “7급 1”을 신설하며, 8급 “3”을 “4”로 하고, 8급 4(종전의 8급 3) 다음에 “9급 1”과 “연구사 2”를 각각 신설하며,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공무원 별도정원의 총계 “1”을 “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을 “3”으로 하며, 8급 “1”을 “2”로 하고, 8급 2(종전의 8급 1) 다음에 “9급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u>행정법무담당관</u> , 고객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 <u>행정법무담당관</u> , 고객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 --- <u>창조행정법무담당관</u> ----- ----- ----- -- <u>창조행정법무담당관</u>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u>행정법무담당관</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u>창조행정법무담당관</u>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삭제</u>	2. <u>청내 정부3.0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u>
3. ~ 23. (생 략)	3. ~ 23. (현행과 같음)
⑤ · ⑥ · ⑦ (생 략)	⑤ ·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중소기업정책국) ① (생	제7조(중소기업정책국) ① (현행

<p>략)</p> <p>② 중소기업정책국에 정책총괄과, 기업금융과, 인력개발과, 규제영향평가과 및 지역특화규제개선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p> <p>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8. (생략)</p> <p>9.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점검 및 평가</p> <p>10. 중소기업 조세 지원의 운용 개선</p> <p>11. 중소기업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점검 및 분석</p> <p>12.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의 수립</p> <p>13. 가업승계 원활화 지원</p> <p>1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운용</p> <p>15.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시책의 추진</p> <p>16.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p>	<p>과 같음)</p> <p>② 정책총괄과, 정책분석과, 동반성장지원과, 규제영향평가과 및 지역특구과----- ----- -----.</p> <p>③ ----- -----.</p> <p>1. ~ 8.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9. ----- ---</p> <p>10. ----- -----</p> <p>11. ----- ---</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	--

지원시책에 대한 종합·조정

17. 취약·낙후 지역 중소기업
의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18. 중소기업 분야의 다자간 및
양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19. 외국의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교류·협력

<삭 제>

20. 외국인 투자유치 및 중소기
업의 해외투자 지원

<삭 제>

21. 중소기업과 관련된 국제 동
향 및 정보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삭 제>

22.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
및 실태의 조사·분석

<삭 제>

23. 해외 파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12. 중소기업에 관한 업종별·
지역별 동향의 조사·분석 및
전망

<신 설>

13. 업종별 경쟁력 실태조사

<신 설>

14. 중소기업 관련 지표 및 통
계의 관리

<신 설>

15. 중소기업 현황 데이터베이
스의 운영

<신 설>

16.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신 설>

2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업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연도별 금융 및 자금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2.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총괄·운영
 3. 금융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기관과의 업무협조
 6. 중소기업전용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8.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9.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 인

통계의 개발

17. 청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및 자체 통계 품질진단
18. -----

④ 정책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시책의 조사·분석 및 정보연계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중소기업시책 성과의 점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점검 및 평가
 4.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시책의 연계 및 중복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시책의 기준, 절차, 서식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시책의 통합적 관리 와 분석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고도화
 7.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시책 및 정보의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운

가 및 지도·감독

10.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에 관한 사항
 12.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지도·감독
 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운용
 14. 중소기업의 어음제도 및 매출채권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의 금융거래 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촉진에 관한 사항
 17.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 경영실태·동향 조사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 ⑤ 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동향분석 및 인력지원계획의 수립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

영

8. 중소기업시책의 연계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사용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⑤ 동반성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지원
 2.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

법」의 운용

3.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및 인적자원관리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9.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촉진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에 관한 사항
12.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14.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의 운영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및 개선
4.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5. 수탁·위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6.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7. 수·위탁 조사기법 개발 및 조사의 신뢰성·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관행 및 결제조건에 대한 조사·개선
9.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10.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육성시책의 수립·추진
11. 중소기업의 조직화 촉진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운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관리·감독
13.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원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교육 등 경영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고용 촉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7.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 기계공업고등학교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18.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 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 기계공업고등학교의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 ⑥ 규제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중소기업 옴부즈만제도 총괄 운영
 6. 옴부즈만 활동지원

운영

14. 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 중소기업관련단체에 대한 조사 및 해산에 관한 사항

⑥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u>7. 옴부즈만 활동 대외 공표 및 홍보</u>	<u><삭 제></u>
<u>8. 옴부즈만 지역별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 운영</u>	<u><삭 제></u>
<u>9. 옴부즈만 전문위원, 전문연 구기관, 공청회 등 운영</u>	<u><삭 제></u>
<u>10. 중소기업 규제 관련 조사연 구 및 평가</u>	5. ----- -----
<u>11. 외국의 중소기업 규제 관련 법령 및 제도 조사·연구</u>	6. ----- -----
<u>12. 지역 및 분야별 중소기업 규제 관련 애로사항 실태조사</u>	<u><삭 제></u>
<u>13. 중소기업 규제 관련 애로사 항 분석, 개선 및 사후 관리</u>	<u><삭 제></u>
<u>14. 중소기업 규제 관련 정보시 스템 운영</u>	7. ----- -----
<u>15. 중소기업 소통마당 및 현장 방문 관리</u>	8. ----- -----
<u>16. 중소기업에 관한 업종별 · 지역별 동향의 조사·분석 및 전망</u>	<u><삭 제></u>
<u>17. 업종별 경쟁력 실태조사</u>	<u><삭 제></u>
<u>18. 중소기업 관련 지표 및 통 계의 관리</u>	<u><삭 제></u>
<u>19. 중소기업 현황 데이터베이</u>	<u><삭 제></u>

스의 운영

20.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의 개발

21. 청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및 자체 통계 품질진단

<신 설>

<신 설>

<신 설>

⑦ 지역특화규제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소상공인정책국) ①·② (생략)

<삭 제>

<삭 제>

9.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10.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

11.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운영

⑦ 지역특구과장-----
-----.

1. ~ 7. (현행과 같음)

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운용

9.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시책의 추진

10.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종합·조정

11. 취약·낙후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소상공인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p>③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22. (생략)</p> <p><u><신설></u></p> <p><u>23. 가맹본부에 대한 수준평가 및 가맹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u></p> <p><u>2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p> <p>제8조의2(중견기업정책국) ① (생략)</p> <p>② 중견기업정책국에 <u>중견기업정책과</u>, 혁신지원과 및 성장촉</p>	<p>③ ----- -----.</p> <p>1. ~ 22. (현행과 같음)</p> <p><u>23. 사업조정제도 종합계획의 수립</u></p> <p><u>24. 사업조정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추진</u></p> <p><u>25. 사업조정심의회 운영 지원</u></p> <p><u>26. 사전조사신청제도 운영 지원</u></p> <p><u>27. 일시정지제도 운영 지원</u></p> <p><u>28. 사업조정 피해 실태조사 및 자료 분석</u></p> <p><u>29. 사업조정 권고, 불이행시 공표 및 이행명령 상황 점검</u></p> <p><u>30. 사업조정제도 교육 지원</u></p> <p>31. ----- ----- ---</p> <p>32. ----- -----</p> <p>제8조의2(중견기업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중견기업정책과</u>, 기업혁신지원과 및 재</p>
--	---

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중견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중견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

8. ~ 10.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도전성장과-----

-----.

③ -----
-----.

1. ~ 6. (현행과 같음)

7.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8. ~ 10. (현행과 같음)

11. 중견기업의 세제 및 입지에 관한 사항

12.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13. 중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총괄

14. 중소·중견기업 성장 저해요인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5.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중견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혁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10. 중견기업 관련 금융 · 세
제 · 입지 및 투자 관련 제도
의 개선 방향 연구

11.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기업 지원시책의 연계에 관한
사항

17.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의 발
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8. 중견기업의 기업가정신 창
달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19. 가업승계 원활화 지원

20. 그 밖에 중견기업에 관한
업무 중 중견기업정책국 내의
다른 과의 소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업혁신지원과장-----
-----.

1. ~ 9. (현행과 같음)

10. 중견기업 관련 금융 및 투
자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 연
구

11. 중견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

12. 중견기업의 기업인수 · 합
병, 신사업 발굴 활성화 등
신성장 모델 발굴 · 확산을 위
한 지원 시책의 수립 및 추진

13. 벤처형 중견기업 지원 시책
의 수립 및 추진

<신 설>

<신 설>

⑤ 성장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 · 추진 총괄
2. 중견기업 성장 저해요인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중견기업의 기업인수 · 합병, 신사업 발굴 활성화 등 신성장 모델 발굴 · 확산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 및 추진
5. 벤처형 중견기업 지원 시책의 수립 및 추진
6. 중견기업 성장 후보 기업군의 발굴 및 관리
7.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중견기업 지원시책의 연계에 관한 사항

14. 중견기업 성장 후보 기업군

의 발굴 및 관리

15. 유망 중소 · 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재도전성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재도전 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중소기업 퇴출부담 완화에 관한 사항
3. 중소·중견기업 구조조정 전문가의 양성, 자격부여,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경영진단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업건강 관리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기업건강 관리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운영 및 연구 · 개선
7. 기업건강 진단기관 및 치유기관 업무 조정
8. 기업건강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8.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의 발
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기업건강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부실화 차단
10.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부실징후기업 정상화 지원
1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
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12.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센
터의 설치 · 운영
13.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실태
조사 실시
14.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15.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
조사 등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계
획의 수립·시행
17. 사업전환 지원정보망의 구
축 · 운영 등 정보 제공
18.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
기업의 컨설팅 지원
19.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
기업의 인수 · 합병 등의 지원
20.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
은 중소기업의 자금 · 투자 ·
인력 · 입지 및 세제 지원

	<p><u>21. 유휴설비의 유통 지원</u></p> <p><u>22. 중소기업의 회생 및 사업정리 지원</u></p> <p><u>23. 중소기업 재기지원계획의 수립·시행</u></p> <p><u>24. 중소기업 재기 관련 실태조사, 동향분석 및 애로사항 발굴·개선에 관한 사항</u></p> <p><u>25. 중소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교육, 조세·법률 상담 및 교육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u></p>
제9조(창업벤처국) ①·②(생략)	제9조(창업벤처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벤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5. 삭제</u>	<u><삭 제></u>
<u>6. 삭제</u>	<u><삭 제></u>
<u>7.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u>	5. -----
<u>8. 벤처기업의 홍보 및 벤처기업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u>	6. -----
<u>9. 벤처기업 관련 산하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u>	7. -----

<u>10.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8. ----- -----
<u>11. 협동화사업의 활성화에 관 한 사항</u>	9. ----- ----
<u>12. 삽제</u>	<u><삽 제></u>
<u>13. 「중소기업 사업 전환 촉진 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u>	<u><삽 제></u>
<u>14. 중소기업 사업 전환 지원센 터의 설치 · 운영</u>	<u><삽 제></u>
<u>15.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 실태 조사 실시</u>	<u><삽 제></u>
<u>16. 중소기업 사업 전환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u>	<u><삽 제></u>
<u>17. 사업 전환 계획의 이행 실적 조사 등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u>	<u><삽 제></u>
<u>18. 사업 전환 절차의 원활화 지 원</u>	<u><삽 제></u>
<u>19. 사업 전환 지원 정보망의 구 축 · 운영 등 정보 제공</u>	<u><삽 제></u>
<u>20.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 기업의 컨설팅 지원</u>	<u><삽 제></u>
<u>21.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 기업의 인수 · 합병 등의 지원</u>	<u><삽 제></u>
<u>22. 사업 전환 계획의 승인을 받 은 기관에 대한 지원</u>	<u><삽 제></u>

은 중소기업의 자금 · 투자 ·
인력 · 입지 및 세제 지원

23. 유류설비의 유통 지원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27. 중소기업의 회생 및 사업정
리 지원
28. 기술 · 경영 혁신형 중소기
업 인증제도의 운영
29. 중소 농 · 공 · 상 상생 협력
의 지원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 ⑤ · ⑥ (생 략)
- 제10조(경영판로국) ① (생 략)
- ② 경영판로국에 판로정책과,
공공구매제도과 및 해외시장과
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
연구관으로 보한다.
- ③ 판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0. -----

11. -----

12. -----

④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경영판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공구매

판로과, 기업금융과, 인력개발
과 및 해외시장과-----

----.

③ 공공구매판로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 | | |
|---|--|
| <u>1.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지원</u> | <u>1.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u> |
| <u>2.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운영</u> | <u>2.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증대에 관한 사항</u> |
| <u>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및 개선</u> | <u>3.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제도의 운영</u> |
| <u>4. 수탁·위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u> | <u>4.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지원</u> |
| <u>5.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관행 및 결제조건에 대한 조사·개선</u> | <u>5.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u> |
| <u>6.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관리·감독</u> | <u>6.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제도의 운영</u> |
| <u>7.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육성시책의 수립·추진</u> | <u>7.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의 운영</u> |
| <u>8. 중소기업의 조직화 촉진</u> | <u>8.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u> |
| <u>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운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관리·감독</u> | <u>9.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운영</u> |
| <u>10.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영</u> | <u>1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의 구축·운영</u> |
| <u>11. 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관련단체에 대한 조</u> | <u>1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실태 조사</u> |
| | <u>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u> |
| | <u>13. 공공구매론 제도의 운영</u> |

<p><u>사 및 해산에 관한 사항</u></p> <p><u>12. 중소기업의 남북경제협력 지원</u></p> <p><u>13.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u></p> <p><u>14.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차별적 관행의 시정</u></p> <p><u>15.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판로 지원</u></p> <p><u>1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u></p> <p><u>17.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운영</u></p> <p><u>18.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u></p> <p><u>19.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구축 지원</u></p> <p><u>20. 중소기업의 판로동향 분석 및 판로 지원 시책의 수립·추진</u></p> <p><u>21.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상표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u></p> <p><u>22. 중소기업 공동 사후 서비스 센터의 설치 및 운영</u></p> <p><u>23. 중소기업 공동물류시설의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u></p>	<p><u>14.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확인제도의 운영</u></p> <p><u>15.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제도의 운영</u></p> <p><u>16. 적격조합확인제도의 운영</u></p> <p><u>1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u></p> <p><u>1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교육에 관한 사항</u></p> <p><u>19.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운영</u></p> <p><u>20. 중소기업의 남북경제협력 지원</u></p> <p><u>21.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u></p> <p><u>22.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차별적 관행의 시정</u></p> <p><u>23.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판로 지원</u></p> <p><u>2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u></p> <p><u>25.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운영</u></p> <p><u>26.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u></p>
---	---

- | | |
|--|--|
| <u>24. 민속공예산업의 육성</u> | <u>로자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u> |
| <u>25.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전시판매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u> | <u>27.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구축 지원</u> |
| <u>26. 중소기업제품 국내 전시판매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u> | <u>28. 중소기업의 판로동향 분석 및 판로 지원 시책의 수립·추진</u> |
| <u>27. 중소기업자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u> | <u>29.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상표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u> |
| <u>28.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u> | <u>30. 중소기업 공동 사후 서비스 센터의 설치 및 운영</u> |
| <u>29. 중소기업제품의 수요기반 및 판로확충에 관한 사항</u> | <u>31. 중소기업 공동물류시설의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u> |
| <u>30. 중소기업에 대한 연계생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u> | <u>32. 민속공예산업의 육성</u> |
| <u>31. 중소기업 마케팅 관련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 <u>33.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전시판매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u> |
| <u>32.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발굴 및 유통망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u> | <u>34. 중소기업제품 국내 전시판매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u> |
| <u>33. 홈쇼핑 및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u> | <u>35. 중소기업자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u> |
| <u>34.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 <u>36.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u> |
| | <u>37. 중소기업제품의 수요기반 및 판로확충에 관한 사항</u> |
| | <u>38. 중소기업에 대한 연계생산</u> |

<u>35.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u>	<u>의 지원에 관한 사항</u>
<u>3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	
	<u>39. 중소기업 마케팅 관련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40.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발굴 및 유통망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u>
	<u>41. 홈쇼핑 및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u>
	<u>42.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43.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u>
<u>④ 공공구매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4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
<u>1.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u>	<u>④ 기업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2.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증대에 관한 사항</u>	<u>1. 중소기업에 대한 연도별 금융 및 자금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운영</u>
<u>3.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제도의 운영</u>	<u>2.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총괄·운영</u>
<u>4.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공</u>	<u>3. 금융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u>
	<u>4.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u>

공기관의 우선구매 지원

5.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6.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제도의 운영
7.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의 운영
8.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9.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운영
1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의 구축 · 운영
1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실태 조사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13. 공공구매론 제도의 운영
14. 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 확인제도의 운영
15.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제도의 운영
16. 적격조합확인제도의 운영
1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 기관과의 업무협조
6. 중소기업전용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8.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9.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 인가 및 지도 · 감독
10.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 ·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에 관한 사항
12.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지도 · 감독
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운용
14. 중소기업의 어음제도 및 매출채권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의 금융거래 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촉진

정조치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교육에 관한 사항

⑤ 삭제

에 관한 사항

17.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 경영실태 · 동향 조사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⑤ 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동향분석 및 인력지원계획의 수립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운용

3.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및 인적자원관리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9.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촉

진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지원

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에 관한 사항

12.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지원

에 관한 사항

14.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지원

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교육

등 경영혁신 지원에 관한 사

항

16. 중소기업 고용 촉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7.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 부

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

기계공업고등학교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18.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 부

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

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육과

정 운영 ·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 부

	<u>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 기계공업고등학교의 산학협 력 지원에 관한 사항</u>
<u>⑥ 해외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20.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u>
1. ~ 15. (생 략)	<u>⑥ ----- -----.</u>
<u><신 설></u>	1. ~ 1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6. 중소기업 분야의 다자간 및 양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7. 외국의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교류 · 협력</u>
<u><신 설></u>	<u>18. 외국인 투자유치 및 중소기 업의 해외투자 지원</u>
<u><신 설></u>	<u>19. 중소기업과 관련된 국제 동 향 및 정보의 수집 · 분석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0.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 및 실태의 조사 · 분석</u>
<u><신 설></u>	<u>21. 해외 파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u>
제11조(생산기술국) ①·②(생 략)	제11조(생산기술국)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생산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u>③ ----- -----.</u>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u>신기술사업화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u>	16. <u>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u>
17. ~ 25. (생 략)	17. ~ 25. (현행과 같음)
26. <u>삭제</u>	26. <u>중소기업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u>
27. ~ 32. (생 략) ④ 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7. ~ 32. (현행과 같음) ④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u>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거래 지원에 관한 사항</u>	11. <u>신기술사업화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u>
12. <u>중소기업 간 기술 융합·복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u>	<삭제>
13. <u>중소기업 간 협업사업의 지원</u> ⑤ 기술협력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제> ⑤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u>삭제</u>	9. <u>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거래 지원에 관한 사항</u>
10. <u>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u>	10. <u>중소기업 간 기술 융합·복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u>

<신 설>

27. 그 밖에 중소기업청의 기획
조정관 및 창업벤처국의 소관
업무 중 다른 과에 분장되지
아니한 사항

④ 공공판로지원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신 설>

<신 설>

9. ~ 20. (생 략)

21. 삭제

22. 재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3. ~ 24. (생 략)

⑤ (생 략)

⑥ 제품성능기술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주 · 전
남지방중소기업청의 제품성능
기술과장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

사항

27. 중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8. -----기획

조정관, 중견기업정책국 및
창업벤처국-----

④ -----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지역내 중소기업 지원 금
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8의3. 지역금융지원위원회의
운영

9. ~ 20. (현행과 같음)

21. 중소기업 계약학과 지원에
관한 사항

22.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에 관한 사항

23. ~ 2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p>남도 내의 다음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시험·분석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p> <p>1. ~ 17. (생 략)</p> <p>18. 그 밖에 중소기업청의 <u>기술혁신국</u>의 소관 업무 중 다른 과에 분장되지 아니한 사항</p> <p>⑦ (생 략)</p> <p>제1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p> <p>①·② (생 략)</p> <p><u><신 설></u></p>	<p>----- ----- -----.</p> <p>1. ~ 17. (현행과 같음)</p> <p>18. ----- <u>생산기술국</u>----- -----</p> <p>⑦ (현행과 같음)</p> <p>제1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p>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중소기업청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본문 관련)

직급별	현행	개정안	증감
총 계	<u>336</u>	<u>347</u>	+11
일반직 계	<u>315</u>	<u>326</u>	+1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6</u>	<u>7</u>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13</u>	<u>14</u>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3</u>	<u>5</u>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43</u>	<u>45</u>	+2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4	7	+3
행정주사 · 공업주사 또는 전 산주사	<u>42</u>	<u>44</u>	+2

[별표 3]

중소기업청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35</u>	<u>346</u>	+11
일반직 계	<u>314</u>	<u>325</u>	+1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6</u>	<u>7</u>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13</u>	<u>14</u>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3</u>	<u>5</u>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48</u>	<u>50</u>	+2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u>4</u>	<u>7</u>	+3
행정주사 · 공업주사 또는 전 산주사	<u>36</u>	<u>38</u>	+2

[별표 4]

지방중소기업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10</u>	<u>413</u>	+3
일반직 계	<u>356</u>	<u>359</u>	+3
·	·	·	
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공업 연구사	<u>69</u>	<u>94</u>	+25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u>16</u>	<u>19</u>	+3
·	·	·	
공업연구사	<u>45</u>	<u>20</u>	-25
·	·	·	

[별표 5]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79</u>	<u>482</u>	+3
일반직 계	<u>42</u>	<u>45</u>	+3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 시설주사 또는 사서주사	<u>12</u>	<u>15</u>	+3

[별표 6]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제16조의2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중소기업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3	1	-2
일반직 계	3	1	-2
5급	1	<u><삭 제></u>	-1
6급	1	<u><삭 제></u>	-1
.	.	.	
지방중소기업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8	13	+5
일반직 계	8	13	+5
.	.	.	
7급	<u><신 설></u>	1	+1
8급	3	4	+1
9급	<u><신 설></u>	1	+1
연구사	<u><신 설></u>	2	+2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 부산기계공 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 학교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1	3	+2

일반적 계	<u>1</u>	<u>3</u>	+2
8급	<u>1</u>	<u>2</u>	+1
9급	<신 설>	<u>1</u>	+1